

# 告知義務와 因果關係에 관한 보험법리 및 실무쟁점 검토

辯護士 田 在 重

법무법인소명 대표변호사, 한국배상의학회 부회장

Study on the legal principles and practical issues with regard to the duty of disclosure and the causation

JAE-JOONG JEON

## 1. 서론

### 가. 관련 상법 조항 및 약관 조항

상법 제 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 655조 (계약해지와 보험금액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와 제6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명보험 표준 약관 제22조 제 1항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21조(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⑤ 제21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나. 고지의무위반 계약해지 요건 관련 실무 쟁점

#### (1) '중요한 사항'의 판단 기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 (2) '고의 또는 중과실' 요건

중요한 사실에 대한 불고지, 부실고지라는 객관적 요건 이외에 그러한 불고지, 부실고지가 고의 혹은 중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에 의하여 고지의무위반이 적용이 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아니하다.

그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고지수령권이 없는 모집인에

대하여 기왕병력 등을 어느 정도 고지한 경우인데, 이 경우 보험자에 대한 고지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고의, 중과실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유로 작용한다.

**(3) 실무적 쟁점**

암보험 계약자가 기왕 암검사에서 의사의 암발병 가능성의 언급 및 추가 검사의 필요성 권고 등 사정이 있었던 경우 이를 고지하여야 하는가?

그 외에도 수년 전에 상당기간 중요한 검사도 하고 치료도 한 적이 있으나 최근 몇 년간 특별히 치료한 적도 없고 증세 악화도 없는 경우 그러한 기왕치료 사실까지도 고지하여야 하는가가 실무상 자주 문제된다.

이와 같은 경우 설혹 청약서 질문표상 질문 내용에 검사 자체가 포함되어 있지만 실무상 고의 또는 중과실 요건 미충족으로 부책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사정 (계약체결 경위, 부실고지의 내용, 사고발생의 우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악의성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고지의무위반 해지의 효과**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의 경우 장래적 효력만 있다.

(민법 제 550조)

이러한 점에서 상법 제655조는 보험자의 보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결과적으로 해지의 소급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1)

**2. 고지의무와 인과관계의 관계**

**가.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에 관한 입법례 비교**

- (1) 독일, 일본, 한국 : 인과관계 요구
- (2) 영국 : 인과관계에 관한 아무런 규정 없음 (2)
- (3) 미국 : 대다수의 주에서 해석상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지 않음
- (4) 프랑스 : 명문으로 인과관계가 필요하지 않음을 규정

**나. 인과관계의 필요성을 인정한 상법 제 655조 단서의 문제점 (상법 제655조 단서 폐지 혹은 엄격 해석 입장)**

- 1) 고지의무 제도가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 및 정보의 불평등에 기초한 것으로서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불량위험을 배제함으로써 보험의 기초를 건전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인과관계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될 경우 사후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의 원인에 따라 보험제도 수혜 여부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배치된다.
- 2) 사실대로 고지한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경우 보험가입이 저지되거나 보험료가 증액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되는 것과 비교하더라도 고지의무를 위반해 놓고도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의 혜택을 다 받는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도 않고 합리성도 없다.
- 3) 보험계약은 위험의 균질성을 기초로 수지상등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하는데, 고지의무를 위반한 불량 위험이 유입되는 것은 이러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

**다. 현행법하의 해석 및 판례 기준**

상기한 바와 같이 입법론으로서 상법 제655조 단서의 폐지론이 상당히 설득력을 가지지만 어쨌든 그 조항이 존치되고 있는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보험자에 유리하게 해석하여 인과관계 없음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판례도 인과관계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계약자에게 부담시킨다거나 혹은 보험자가 입증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라도 인과관계를 조금만 엿볼 수 있으면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데 학설과 판례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3. 인과관계의 입증 문제**

**가. 상법 제 655조 단서의 입증책임 관련 대법원 판례의 입장**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 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부존재의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10.23. 선고 92다28259호; 1993.4.13. 선고 92다52085,52092 판결; 1994.2.25 선고 93다52082호 등 다수)

(1) 다만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적립금 반환의무는 여전히 이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상품적 특성(저축성)에 기인하는 것이지 고지의무위반효과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이로 인하여 영국법 준계약관을 택하는 해상보험증권에서는 상법 제65조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게된다. (대법원 1996.3.8 선고 95다2879호)

**나. 약관에 의하여 입증책임이 전환된 경우에 대한 대법원 판례**

상기한 바와 같이 생명보험 표준 약관 제22조 제 5항은 “제 21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 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고 하여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보험자에게 전환시키고 있는 바<sup>(3)</sup>, 이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은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하므로, 보험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이 공제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보험자에게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한다”고 하면서도 그 경우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공제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공제자의 계약해지권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 인과관계 인정 여부 판단 기준**

(1) 입증책임 및 입증 정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상법 규정에 의할 때 (손해보험의 경우 등) : 인과관계가 없음을 계약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계약해지 가능
- ② 입증책임이 전환될 때 (생보표준약관 등) : 인과관계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으면 (규지할 수 있다면) 계약해지를 허용

위 ①②는 법리상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으며, 결국 인과관계에 관한 해석기준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2) 인과관계 인정 여부의 현실적 판단 기준**

학설로는 상당인과관계설<sup>(4)</sup>이 있고, 그 중 절충적상당인과관계설<sup>(5)</sup>이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으나 이러한 추상적인 기준은 실상 고지의무위반과 관련된 인과관계의 실무적 판단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상기한 바와 같이 인과관계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다수 대법원 판례는 ‘인과관계를 조금만 엿볼 수 있으면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인과관계설과는 상당히 다른 기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체는 유기체적인 것으로 의료적 인과관계는 의학상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상당인과관계설은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실무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보험의 본질인 위험선택기준을 기준으로 개별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결국 이 부분은 아래에서 보듯이 연역적 기준을 설정하기 보다는 개별적 사안들의 집적을 통하여 귀납적으로 판단기준을 도출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sup>(6)</sup>

**라. 인과관계에 관한 구체적 사례 검토**

**(1) 인정된 사례**

- ① 한쪽 눈이 실명된 사실 불고지 - 한쪽 눈이 실명된 자는 제 1종 보통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데도 제1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의 일방과실에 의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 인정 (대법원 1997.10.28 97다 33089호)
- ②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종사함에도 보험계약 체결시 주 부라고 허위고지 - 그 후 일본의 유흥가에서 새벽 5시에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허위고지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인정 (대법원 1992.10.23. 선고 92다 28259호)
- ③ 주운전자 허위고지 - 운전 중 중앙분리대 넘어 사고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 인정 (대법원 1994.2.25. 선고 93다 52082 판결)
- ④ 유상 운행 미고지 - 사고위험 증가 인정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52085,52092 판결)

(3)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상품에서는 상법 규정대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명보험과 대비됨.  
 (4) 어떤 사건에 있어서 앞의 사실과 뒤따르는 사실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또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선행사실이 있으면 그러한 종류의 후행사실이 초래되는 관계를 말함. 다시 말하면 경험칙상 그러한 결과에 '상당한' 조건만이 원인이 된다고 하는 '상당성의 척도'에 따라 판단.  
 (5) 행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자가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하여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  
 (6) 일부 논자들은 영미법계의 近因論 (principle of proximate cause)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으로 제안하나 이 역시 실무적으로는 큰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⑤ 매독성 척수염 기왕증 불고지 - 요독증(尿毒症)으로 사망. 척수염에 걸린 자가 요독증(尿毒症)으로 사망하는 경우 사망시기와도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 (일본 대심원 昭和 4. 12. 21. 판결)
- ⑥ 사인이 기왕증과 병명이 다른 맹장주위염이라 하더라도 이미 그 기왕증이 생명의 위험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관계를 가지는 질병인 이상 설령 사인이 다른 사고로 인한 것이라 하여도 위 기왕증은 보험계약자인 갑이 계약체결에 있어서 보험회사에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 (동경지방재판소 大正 2. 10. 28. 판결)
- ⑦ 매독기왕증 불고지 - 뇌막염에 의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 (동경지재 大正 5. 2. 26. 판결)
- ⑧ 기왕증과 사인이 직접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왕증을 가지고 있고, 임신 중의 자는 보통의 건강에 비하여 저항력이 약하고 또는 사망 위험이 높다는 경험칙상 기왕증 내지 임신의 사실과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판시 (대심원 昭和 11. 2. 29. 판결)

(2) 부인되는 사례

실무상 다음과 같은 경우 별 다툼이 없이 보상처리하고 있음 (분쟁조정 사례 및 보험사 자문 등)

- ① 교통사고로 정형외과 등 입원 치료 사실 - 암진단
- ② 요통, 비뇨기과 등의 치료 병력 - 폐질환
- ③ 지방간에 대한 부실고지 - 뇌종양 진단
- ④ 직업 위험등급 허위고지 - 여관 투숙 중 화재를 피하기 위하여 뛰어내리다 요추부 상해 등 수상, 상해 보험금 청구

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의 보험계약 해지의 문제

가. 쟁점

상법 제 655조 본문은 고지의무위반 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그러나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는 바, 여기서 보험자가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은 명백하나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sup>(7)</sup>

나. 학설 및 판례 / 실무

이에 대하여 학설은 나누어지며, 대법원 판례는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에 관한 판례의 실시 중에서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여 해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판 1997.10.28 선고 97다33089 대판 1997.9.5 선고 95다25268호 판결 등 다수)

그러나 현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약관 공히 이 경우의 계약해지 허용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고, 현재 하급심 실무 및 분쟁심의 실무, 그리고 보상실무에서 일관되게 해지를 허용하고 있는데 (서울고법 2000.12.19 선고 2000나35223호 판결 및 다수 하급심 판결, 조정례 및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등),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없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 1) 우선 위 대법원 판결은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에 관한 일반적인 설시이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상법 제 65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후 이와 별도로 계약은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정면으로 다루어진 사안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7)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계약이 자동 해지되거나 종료되는 경우에는 이 문제가 없으나 상당수 보험계약은 그 후에도 계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해지 가능성이 실무상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

- 2) 보험사고 전이라면 고지의무 위반이 밝혀질 경우 보험자는 일정 조건 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반면에 인과관계 없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되어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
- 3) 만약 해지를 할 수 없다면 그 후로도 인과관계가 없는 보험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할 경우 계속해서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4) 상법 규정 체계를 보면, 제651조가 고지의무 위반 효과로서 해지권을 인정하면서 제655조 본문에서는 특별히 해지의 효과로서 보험금 지급책임의 유무와 반환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655조 단서의 취지는 인과관계가 없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제655조 본문의 이른바 소급효 있는 해지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시키려는 것이지 보험자의 보험계약 해지권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액청구권)라고 되어 있는 조문의 제목으로도 알 수 있는데, 결국 제655조 본문과 단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해지를 하는 경우에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의 유무에 관한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다. 즉, 고지의무 위반효과는 해지이고 인과관계의 문제는 보험금 지급책임 인정의 요건으로 보아야 한다.
- 5) 보험계약의 대원칙인 최대선의성의 원칙에서 보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효력을 지속시키게끔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 6) 한편 독일보험계약법 제21조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자의 보험금지급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라도 보험금지급의무를 진다.”고 함으로써,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라도 계약을 해제<sup>(6)</sup>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7) 이러한 학설, 판례상의 논란을 명확하게 종료시키기 위하여 상법 655조 단서 조항을 계약은 해지하되 보험금은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 다. 약관 규정상 해지의 허용

##### (1) 생명보험표준약관 제22조 제5항

“...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는 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 (2) 화재보험표준약관 제12조 제3항, 5항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0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이하 생략)”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라. 해지의 범위

한 보험종목으로 다양한 보험사고를 보상하도록 상품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 해지권행사의 범위는 해당 상품의 분리가능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상품결합이 강하지 않고 개별상품으로 나뉘어 질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의 보상 품목에 대하여 고지의무위반이 있어도 분리 가능한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제기되는 한계의 문제에서는 상품구성에 관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 및 그 상품이 보상하는 보험사고의 결합 정도 및 개별취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5.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은 해지되나 보험사고와

#### 인과관계 없어 보상하게 될 경우 보상 범위

##### 가. 해지와 사고 발생 순서에 따른 법률 효과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후에 (인과관계 유무에 따른 보상은 별개로 하고)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인과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6). 독일보험법에서는 해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의 면에서는 다를 바 없다.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하며, 실무적으로는 보험자의 계약해지의 통지가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한 시점이 기준이 된다.

**나. 손해발생이 지속되는 경우의 보험자의 책임범위**

**(1) 쟁점**

질병보험에서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그 질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 보험자는 발생한 질병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질병이 수년간 지속될 경우 전부 보상할 것인지(全部補償說) 아니면 계약해지 시까지만 보상할 것인지(一部補償說)가 문제가 된다.

**(2) 생명보험 약관에 대한 조정 사례**

**종전 암보장상품 약관 하에서**

1) 보험회사는 암에 대한 보험금으로 각각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확정된 때 암진단급여금을,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암수술급여금을,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입원하였을 때 암입원급여금을,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통원하였을 때 암통원급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고,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지급사유(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sup>9)</sup> 보상종목인 암진단, 암수술, 암입원, 암통원 급여금 중 보험계약 해지시까지 이미 발생한 급여금만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무효 결정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첫째, 암으로 진단되어 입원하고 수술하는 과정(사망까지 연장되는 경우도 포함)은 시간의 결과에 따라 연속되어 발생하는 것이 의료경험칙상 일반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과정은 일련의 사고(단일한 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각각 다른 별개의 사고(독립적인 사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둘째,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인 암진단, 암수술, 암입원, 암사망 등을 구분하여 열거한 것은 암진단 후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시기를 구분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셋째, 암

진단 후 암과 인과관계가 없는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면서 보험수익자가 향후 기대할 수 있는 보험 금액 등이 축소되는 약관의 내용은 ‘상법 제655조가’ (필자 첨가)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상법 제 66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되는 점” 등이었다.<sup>10)</sup>

**(3) 소결**

위 하급심 판결례와 금융감독원의 결정 이후 암보험약관조항이 암보험사고를 진단확정·통원·입원·수술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각 사유에 대해서 각 암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금을 나누어서 지급한다는 의미만을 지닐 뿐이고 각 사유를 독립된 별개의 보험사고로 보지는 않으며, 따라서 해지시까지 가사 그 중 일부만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급여금항목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 급여금을 다 보상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데 의견이 모아진다.

요컨대,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인과관계 없는 보험사고에 대해서 지는 책임은, 일체로 파악되는 단일한 보험사고의 전부에 미친다는 점에서 全部報償說이 현생 상법에 타당한 해석론이라 할 것이고, 만일 보험자가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암보험금의 지급 책임을 지는 경우에, 고지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시까지 생겨난 사유에 해당하는 암급여금만을 지급하고 해지 이후에 생겨난 사유에 해당하는 암급여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은 상법 제655조 단서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무효로 된다. (상법 제 663조)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실무상 이미 예정된 진료비 이외 다른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4) 補論 - 암보장 상품외의 경우 보상범위의 제한 필요성**

위와 같은 해석론이 법리상 타당하다고 보이지만 최근 암환자의 생존률이 높아지고, 치료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암보험요율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암종류별로 의학적 통계를 활용하여 최초발견 이후 어느 정도 암보험의 효용을 달성할 정도의 기간까지 (가령 2~3년) 치료·수술·사망

9) 종전 암보험약관은 "피보험자의 암진단확정후 암진단확정과 인과관계가 없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암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에 한하여 그때(계약해지시)까지 발생한 암으로 인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이 경우 이 계약해지시 이미 지급한 금액은 공제합니다."고 규정하였다.

10) 이는 서울고법 2000 나35223 호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결정이기도 하다.

에 대하여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물론 그 경우에도 상법 제663조 위반 문제가 대두되겠지만 보험제도의 단체성과 암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선에서 제한할 경우 이를 무조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 참고문헌

양승규 보험법 (2004)

김성태, 보험법강론 (2001)

장경환 ‘암 등을 담보하는 질병보험에서의 보험자의 책임개시 및 인과관계 없는 사실의 불고지의 효과’ 국제법무연구8호 (2004.2)

박세민 ‘상법 제655조 조문의 문제점과 해석방향’ 고시연구 33권 3호 (2006.3)

‘보험법개정방향에 대한 연구’ (하) 법조 55권 6호 (2006.6)

최병규 ‘고지의무에서의 인과관계’ 고시연구 30권 6호 (2003.6)

금융감독원 표준약관

대법원 판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원) 분쟁조정사례집